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2
----------	-----

제출년월일 : 2020.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우리군 학생의 안전한 주거 환경 및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마포공공기숙사의 평창군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사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 제4조(입사신청자격) : 평창군에 주소를 둔 평창군민의 자녀로 수도권 소재(서울, 경기, 인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 제6조(입사신청) : 필수 구비서류(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산점 관련 기타증명서)

나. 입사 제한 사유(안 제5조)

- 법정 전염병(결핵 등), 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 보호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있지 아니한 학생 등

다. 입사생 선발 시기 및 인원(안 제7조, 제8조)

- 제7조(선발시기) : 매년 2월까지 선발
- 제8조(선발인원) : 10명(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라. 심사 방법(안 제9조)

- 제출한 성적 증명서에 의한 순위에 따라 심사
-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것 하나만 적용
 - * 성적의 20% : 국가유공자, 국민기초보장생활수급자,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 * 성적의 10% : 평창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호자의 평창군 거주 연수를 감안하여 선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학생 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에 196,200천원 반영, 이후 매년 5,000천원 편성

다. 합 의 : 기획실 예산부서 합의

라. 기 타 :

- 1) 입법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20. 9. 15. ~ 2020. 10. 6.)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2020. 9. 14. 기획실-11301)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 9. 14. 기획실-11301)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0. 9. 3. 복지과-52226)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하고 평창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참여하는 마포공공기숙사의 평창군 선발 입사생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포공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소재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간, 신청장소, 신청방법
2. 신청 자격
3. 선발기준, 선발인원, 선발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입사신청 자격) 기숙사 입사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서울, 경기, 인천)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전염성 질환이 없는 학생
2.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결핵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2. 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3. 보호자의 주소가 군으로 되어있지 않은 학생
4. 그 밖에 입사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학생

제6조(입사신청) 기숙사에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따른 기숙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3. 건강진단서(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병원 발행분 등)
4. 그 밖의 증명서류(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의 경우)

제7조(선발시기) 입사생은 매년 2월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선발인원)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적정한 인원을 구분·선발하여야 하며, 입사 가능한 인원 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2.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 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
3.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으로 충원이 어려운 때에는 규정에 따라 추가로 입사생을 선발하며, 추가 선발로도 충원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군 지역 출신 학생 중 기숙사 생활관장이 입사생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선발 및 심의) ① 입사생의 선발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 ② 입사생의 선발 시, 제6조제1호에 따른 성적의 70%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③ 입사생의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적용한다. 이 경우, 두 사유 모두에 해당하면 그 중 가산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자녀: 성적의 20퍼센트

2. 군내 고등학교 졸업자: 성적의 10퍼센트

- ④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군 거주 연수를 고려하여 우선 선발한다.

제10조(입사권) 기숙사의 입사는 선발된 순위에 따르고, 입사기간은 당해 연도(1년)로 한다.

제11조(입사 포기 및 당연 퇴사) ① 입사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 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 포기자로 본다.

② 기숙사 규정에 의해 기숙사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신청서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학 교 명			
지 원 자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출 신 학 교		
	졸업년도	학 교 별	소 재 지
	년	초등학교	시(군) 읍, 면
	년	중 학교	시(군) 읍, 면
	년	고등학교	시(군) 읍, 면
차량 소유 여부			
친 권 자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근 무 처	직 위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통 입주자격 필수 기준에 따라,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 조건 위반 시 퇴거 조치
- 본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이하) 제외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친권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관계법령 발취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044-203-6450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전문개정 2007. 12. 21.]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출신 대학생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건립하고 우리군이 수도권 진학 학생들의 주거복지 향상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참여하는 마포공공기숙사에 대하여 보증금, 운영비, 가전설치비 지원

나. 관련조문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 이후 기숙사 5실 10명 지속배정

나. 추계 결과

항 목	산출기초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합 계	196,200	5,000	5,000	5,000	5,000	216,200
보 증 금	33,240천원 × 5실	166,200					166,200
운 영 비	1,000천원 × 5실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가전비등	5,000천원 × 5실	25,000					25,000

※ 보증금 166,200천원은 기숙사 참여철회 시 회수

다. 재원조달 방안 : 평창군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연락처	(033) 330 - 20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196,200	5,000	5,000	5,000	5,000	216,200
보 증 금		166,200					166,200
운 영 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가전비등		25,000					25,000
재원 조달		196,200	5,000	5,000	5,000	5,000	216,2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6,200	5,000	5,000	5,000	5,000	216,200
	지방세	196,200	5,000	5,000	5,000	5,000	216,2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